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목 차>

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시설 등 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홍명기
	담당부서 (과)	요양보험제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임을기		연락처	044-202-3492
	과장	신재형		이메일	mk7069@ mail.go.kr

2024. 11. 18.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시설 등 기준 신설								
	2.규제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별표 1의5)								
	3.위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28~2024.12.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령, 노인성 질병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를 위해 '08년부터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중이나,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방문요양 급여 중심의 단조로운 급여 이용 및 제공행태로 특히 건강상 취약한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거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가급여간 통합적 이용 및 제공을 위한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정하여 적정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임								
	7.규제내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설정 * 단, 현행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및 별표 10 등) 적용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장기요양기관 운영자</td><td>22,574개소(재가급여 제공기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22,574개소(재가급여 제공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22,574개소(재가급여 제공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 함으로서 운영의 법적안정성 제고 및 적정 급여 품질 유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미해당					

		예외기준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 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제1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은 공단이 선정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개정) '24.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5.1.3. 시행)되며 하위법령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 마련토록 위임
- (필요성) 고령, 노인성 질병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를 위해 '08년부터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중이나,
 -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방문요양 급여 중심의 단조로운 급여 이용 및 제공 행태로 특히 건강상 취약한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 지원에 어려움 노정
 - 재가급여간 통합적 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법령상 명시함으로써 급여가 적정 제공되도록 시행규칙 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기존 규제 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등 기준 신설
	내용	○ 기존의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 (인력 기준) 현행과 같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9 준용 - (종사자 자격) 현행과 같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9 준용 - (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9 준용 - (운영기준) 현행 규정에 따른 월 평균 사용 현황보다 낮은 기준 < 재가급여 서비스별 월 평균 사용일 수('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

		구분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월 평균 사용일 수	16.8일	4.0일	18.0일
규제대안3	대안명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기준 강화			
	내용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각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외형적으로 참여기관 확대 가능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등 기준은 제도 운영 및 급여 품질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기준 미설정 시 기관 및 제도, 품질관리 불가
규제대안2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 참여 가능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부 제한 우려
규제대안3	전문인력을 통한 보다 양질의 급여 제공 가능	전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기관 경영부담 가중, 병원 대비 비교적 낮은 임금 수준으로 채용 어려움 이용규모 등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배치 시 인건비 낭비 우려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장기요양기관 (보람찬어르신센터)	'24.11.13., 서면	○ 전문인력 추가 배치 의무가 없어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 퇴색 우려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간호 월간 제공 횟수 다양화 필요 (1회 이상) * 가정방문형은 월 2회 방문간호 제시	○ 전문인력 배치에 다른 이점도 있으나, 병원 대비 낮은 임금 수준에 다른 실제 채용상 어려움, 실제 채용시 인건비 부담 등 고려 필요 ○ 수급자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 질환 보유* 중인 점 고려 필요 * '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평균 3.5개
장기요양기관 (한울타리재가노인 복지센터)	'24.11.13., 서면	○ 중증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간호사 선호하므로 필수인력으로 배치 필요	○ 전문인력 배치에 다른 이점도 있으나, 병원 대비 낮은 임금 수준에 다른

		○ 통합재가만을 위한 별도공간 마련 곤란 ○ 급여의 최소 제공 기준은 수급자의 필요나 욕구와 달리 운영될 소지 * 가정방문형: 방문요양 월 4회, 방문간호 월 2회, 주야간보호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월 각 1회	실제 채용상 어려움, 실제 채용시 인건비 부담 등 고려 필요 ○ 통합재가만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은 임의 사항임 ○ '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 고려 통상의 급여 이용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 기준 적용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통합재가서비스는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은 각각의 급여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음
- 이해관계자의 의견(대안3)과 같이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나,
 -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 필요성은 제도의 운영 경과를 통해 규모에 따른 필요 인력 수 등 체계적으로 분석 후 검토하는 것이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낭비 등 요인 제거 가능
- 한편 대안1과 같이 각종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할 경우, 기관의 상당한 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기관관리가 불가하고, 기관 난립과 이로 인한 경쟁 심화로 기관 수익성도 크게 악화될 수 있어 이는 급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 농후
- 따라서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급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2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규제목표

- 법령상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법적 안정성 제고 및 현장 혼란 미연에 방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됨에 따라 신설됨
- 다만,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참여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인력 등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현행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등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한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기존 기준에 따라 시장진입이 가능하므로 동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검토대상 아님
② 규제 방식		검토대상 아님
③ 예비분석모델		검토대상 아님
	판단 근거	검토대상 아님
④ 대상 업종		검토대상 아님
⑤ 예비분석내용		검토대상 아님
⑥ 차등화적용 여부		검토대상 아님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사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을 따르고 있고, 당해 별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재검토 기한을 두고 있어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포괄적 규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연한 분류 체계		개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각각의 급여제 공 기준을 따름
네거티브 리스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포지티 브 규제에 해당
사후 평가관리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운영 시 갖추어야 할 기준으 로서 사후 평가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하 최소기준에 해당하므로 규제 중 일부 면제 내지 유예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가로서 독일(수발보험), 일본 등이 있음
- ① (독일) '재가생활'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호처치, 기본간호서비스(건강관리+우리나라의 방문요양 중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내용을 하나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상자(=수급자)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부분적 또는 온전히 지원하거나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관찰하고 지도, 훈련하는 등 기관에서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사회수발센터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가사지원, 간병, 상담, 일상생활지원, 교통, 보조장비 대여, 식사배달, 주간보호, 정보제공 등 광범위한 서비스의 조정역할도 담당
- ②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개호(=돌봄)가 필요한 사람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생활지원, 재가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연속하여 제공 추진 중
 - '11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기순회, 수시대응형서비스, 복합형서비스를 신설하였고, 방문개호의 필요성 및 서비스제공주기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방문개호와 간호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편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별표 15) 등에서 각각 시설 종사자 수 배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구분	시설별 종사자 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장 1명, 총무 1명, 의사(계약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생활지도원: 성인 10명당 1명, 아동, 지적/자폐장애: 5명당 1명, 영양사: 1명(50명 이상 시설)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의사(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50명당 1명, 영양사 1명(1회 급식 50명 이상)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시설장 1명,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의사(계약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생활복지사 1명, 직업훈련교사: 필요인원, 조리원 1명 등
* 입소자 수, 시설종류 등에 따라 일부 상이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인력 등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현장순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 적용 중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집행상의 문제발생 우려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인력 내지 시설배치 필요 없고, 관련한 중앙 및 지방재정 투입도 없으므로 재정상 집행 차질 우려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4.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됨에 따라 법률 시행('24.1.3.)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재가급여를 제공 중인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참여 확대, 급여 품질의 적정성 유지 등을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을 반영
-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 현행보다 전문인력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기관 운영 부담, 간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상의 어려움, 수급자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용 필요성 등에 관해 제도 운영 경과를 보며 검토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의 변화, 적정 급여 품질 유지 등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인력 등 기준 변경 필요성 지속 검토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은 현행과 같이 각각의 제공하는 급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준수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이는 급여의 적정 제공과 함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통합재가서비스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수급자가 서비스의 수

혜를 받게 하고자 함임

-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기하고 현장 혼란 등 각종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장기요양기관
활동제 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준수
비용항목	노동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해당없음 * 기존의 인력, 시설 활용하여 운영 가능(해당없음)
근거설명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은 아래의 기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1) 인력,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운영기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 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등 기준 설정을 통한 다종급 여 이용 기회 확대
편익항목	기타
편익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해당없음 * 수급자의 사용 가능한 월 한도액은 종전과 같으며, 추가적인 부담 발생하지 않음(해당없음)
근거설명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수급자)은 기존의 사용가능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조합의 급여이용 혜택으로 편익 증가